

# 2020년도 제1회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제1회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전라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군 (계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 원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경력경쟁 임용시험	기술 (7급)	시설 (건축)	10	제1차: 물리학개론 제2차: 건축계획학
합 계			10	

##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1형, 과목당 20문항)

구 분	2과목
시험시간	40분 (10:00 ~ 10:40)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3. 응시자격

####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최종시험(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 4. 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 4. 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10.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2019. 4. 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11.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나. 응시연령: **20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제한(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 가능)

①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가 전라남도로 되어 있거나,

②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과거에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라. 학력 · 경력 ·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 요건: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최종시험(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 건축사 자격증 사본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문제출제

출제기관	과목수	출 제 과 목	공개여부	문제책 회수
전라남도교육청	2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비공개	회수

※ 시험 문제는 비공개이며,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합니다.

#### 5. 시험시행 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2020. 3. 18.(수)	2020. 3. 28.(토)	2020. 4. 8.(수)
면접시험	2020. 4. 8.(수)	2020. 4. 21.(화)	2020. 4. 27.(월)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ne.go.kr>) “정보공개 > 시험정보”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 확인: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서 안내하며,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입니다.

##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2020. 2. 24.(월) 09:00 ~ 2020. 2. 28.(금) 18:00

나. 취소기간: 2020. 2. 24.(월) 09:00 ~ 2020. 3. 2.(월) 18:00

### 다. 접수방법

○ 접수사이트: <http://edurecruit.jne.go.kr> > 지방공무원채용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마감일 마감 시간대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오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수수료: 7,000원

### 마. 납부방법: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응시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단, 원서 접수 마감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응시로 환불)

### 바. 응시원서 접수용 사진

○ 사진파일: 3.5cm×4.5cm(파일 100Kbyte 이하), JPG형식, 컬러 증명사진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수험생 본인 얼굴 정면(상반신)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사. 응시표 출력 · 지참

○ 응시표는 2020. 3. 20.(금) 10:00 ~ 면접일까지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시험당일 반드시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유의사항

- **【수정, 취소】**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접수 및 기존 원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하며, 취소는 2020. 3. 2.(월) 18:00까지 가능합니다.(단,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 **【수수료 환불】** 응시수수료는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됩니다.(취소기간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중복접수 불가】**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접수 확인】** 원서접수 후 응시원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접수번호가 기재되었으면 정상처리 된 것입니다.)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 응시자 과실로 응시가 불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확인】** 거주지 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PC환경】** 운영체제 윈도우 7~10, 익스플로러 버전 7~11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가.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점이 모두 해당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가산점 하나만 선택</li> </ul>
나. 의사상자 등 대상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지원 또는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li> </ul>
다. 공통적용 가산점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1% 또는 0.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산점 적용은 매과목 40%이상 득점 시 적용</li> </ul>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의사상자 등 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의사상자 등 대상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적용 가산점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하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다음 표에 제시한 통신·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계급	자격증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 분야	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사무관리 분야	7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2012. 1. 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 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비율(10% 또는 5%)을 의사상자 등 대상의 경우 증서번호와 가산비율(5% 또는 3%)을 입력해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또는 증서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필기시험 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또는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합격자 결정

### 가. 필기시험

-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10%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전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나. 면접시험

- 1) 우수: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2) 미흡: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 3) 보통: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 다. 최종합격자

- 1)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합니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합니다.
- 2)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합니다.
- 3)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 그 밖에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 최종합격자의 등록 및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지정한 기일 내에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에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필한 자는 전라남도교육청 산하기관에 임용합니다.

다. 전보 및 전직 제한

-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5항에 의거 3년간 전보할 수 없으며, 4년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할 수 없고, 동령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3년간 전직이 제한됩니다.

## 10.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실로 시험지가 배부된 후에는 시험실로 응시자 입실 불가)
- 마.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바.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와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스마트안경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 ※ 통신장비, 전자기기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 시작 전에 전원을 차단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계산 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시계, 문자 송·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 시계 등은 소지 불가하며,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함)
- 아. 기타 보조기구(귀마개, 모자 등)는 착용이 불가합니다.
- 자.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2020. 3. 20.(금) 10:00부터 면접시험일까지는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시험당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시험 시작 1시간 전까지 고사관리 본부에서 재교부 합니다.

- 차.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답안지에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카.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타. **시험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 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퇴실하지 못합니다.
-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인사팀)로 문의 바랍니다.
- 전화 : (061) 260- 0717
  - 주소 :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ne.go.kr>) “정보공개>시험정보” 란에 공고합니다.